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223호

「도로설계기준(KDS 44 00 00)」 및 「도로공사 표준시방서(KCS 44 00 00)」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4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### 「도로설계기준(KCS 44 00 00)」 및 「도로공사 표준시방서(KCS 44 00 00)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 사유

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규정의 최신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로설계기준(KDS 44 00 00)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(KCS 44 00 00)를 정비함으로써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(20.3)의 개정된 시설한계 내용을 '도로설계기준 횡단구성(KDS 44 20 05)'에 반영
- 「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」(17.4)의 포장재료(기층)에 대한 개정내용을 '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동상방지층, 보조기층 및 기층 공사(KCS 44 50 05)'에 반영

- 「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」(18.7)의 블록포장의 기층부분 개정내용을 '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블록포장(KCS 44 70 05)'에 신설 등

### 3. 의견제출

도로설계기준(KDS 44 00 00)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(KCS 44 00 00)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.10.24(월)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		(찬·반 의견과 이유)

#### ○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(전화 044-201-3893, 팩스 044-201-5588)
- 전자우편: kimek@korea.kr